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9. 27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김부병, 주무관 이창욱 • ☎ (044) 201-3755, 3765, 4835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“ ‘할랄’ 타는 종잇장 패널 수두룩 ” 보도 관련

-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모든 공장(‘05.7월~)과 600㎡ 이상 창고(‘14.8월~)는 난연등급* 이상의 복합자재(샌드위치패널)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

* 난연등급 : 5분간 화염으로 직접 가열해도 이를 관통하는 균열, 구멍 및 용융 등이 없는 등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

- ‘15.10월부터는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공급업자, 공사시공자, 공사감리자가 “복합자재품질관리서”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확인·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- 우리부는 복합자재(샌드위치패널)의 적합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‘14년부터 전국 건축공사현장에서 복합자재*의 성능을 평가하여 시정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,

* (‘14년) 49개소, (‘15년) 72개소, (‘16년) 71개소, (‘17년) 72개소

- 특히 금년부터는 시공현장에서 부적합한 복합자재 사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조·유통업체까지 추적·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

- 아울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,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 대한 처벌*도 대폭 강화할 계획(변재일의원 ‘18.4월 대표발의)입니다.

* (현행) 2년 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 → (개선) 3년 이하 징역, 5억원 이하 벌금

< 보도내용 (9.26 MBC) >

“1·2천 빼먹겠다고...활활 타는 종잇장 패널 수두룩” 보도 관련

- 샌드위치 패널로 인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판 두께 기준을 강화하였으나,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, 국토부는 단속조차 않고 있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부병 사무관(☎ 044-201-37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